

2013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
**단체교섭요구서**

**2013. 5. 24.**

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#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## 단체교섭 요구안

### 전 문

경상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헌법과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·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·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며,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【적용범위】**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.

**제2조 【성실의 의무】** ①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.

②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·이행할 의무를 갖는다.

**제3조 【자치법규의 제·개정】**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·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·규칙 및 훈령(행정지침 포함)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.

**제4조 【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】** ① 본 협약이 지방 공무원의 근로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·조례·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.

② 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합 활동

**제5조 【노동조합 활동 보장】**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,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,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.

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.

1. 조합원 총회
2. 정기 · 임시 대의원대회, 상임위원회 회의
3. 정책협의회,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
4.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

③ 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2시간의 공무원노동 관련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지도하고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· 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 · 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.

⑤ 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(선출직)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
**제6조 【부당노동행위금지】**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.

**제7조 【시설편의 제공】** ① 교육감은 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.

② 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,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.

③ 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,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 ·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

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**제8조 【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】** 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 【통지의 협조】**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.

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

1.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(홈페이지 게재로 대체 가능)
2.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
3.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
4.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
5.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

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

1. 규약·규정의 변경사항
2.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
3.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

**제10조 【문서열람, 복사 및 자료제공】**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·자료·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.

**제11조 【홍보활동보장】**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### 제3장 인사 및 조직

**제12조 【조직·인력 적정배분】** ①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·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통합 운영 한다.

④ 교육감은 전문직렬(소수직렬)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한다.

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.

⑦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실을 확대(학사 및 재정)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.

**제13조 【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】** 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조기에 100%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한다.

④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년 2회 개최 한다.

⑤ 교육감은 학교장 부재시 징수 및 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.(회계관련 전결위임규정)

⑥ 교육감은 청렴업무 관련 공문 시행을 교원과 분리 시행한다.

**제14조 【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】** 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 승진 · 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상위직급 과원이 발생한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 매식비를 지급한다.

④ 교육감은 조무원이 소규모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

⑤교육감은 조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한다.

**제15조 【각급학교 근무시간】**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.

**제16조 【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】** 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17조 【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】** 교육감은 정기인사(1월,7월)시 7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18조 【인사예고제 실시】** 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.

**제19조 【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】** 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,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경북교육상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.

**제20조 【공정한 인사제도 정착】** ①교육감은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한다.

③조합은 노동조건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개정한다.

**제21조 【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개선】** 교육감은 도교육청 근무자의 근무연한을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, 학교 경력자가 도교육청에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**제22조 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】** ①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교육감은 공공도서관 분관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

근무 시 인력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③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렬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하도록 한다.

####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

**제23조 【공무원 연수제도 개선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24조 【국외연수 확대 등】** ①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.

**제25조 【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】**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.

**제26조 【보직관리규정 정비】** 교육감은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, 개정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27조 【수당 신설 등】** ①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놀이시설관리, 소방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.

②교육감은 학교 회계규칙 개정을 통하여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업무수당을 신설한다.

1. 5급이상 : 월10만원

2. 6급이하 : 월 8만원

③교육감은 학교에서 정부 시책사업 및 각종 연구·시범학교 등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④교육감은 공동조리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 공동조리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5장 단체교섭

**제28조 【합의서 작성】** 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,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.

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.

**제29조 【단체협약 이행】** 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.

②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· 후생복지 및 경제적 ·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30조 【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】** 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.

②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③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
**제31조 【보충협약 기타】**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경제적 ·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제6장 근로조건

**제32조 【대체인력 지원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**제33조 【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】** ①교육감은 행정실근무

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.

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설정을 고려·설치하도록 한다.

**제34조 【업무대행】**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방과 후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(시간 외수당)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,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문제 해결 방안(예비기사 확보,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 등)을 마련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.

**제35조 【당직실 근무환경 등】**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 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.

② 교육감은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.

③ 교육감은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반일휴무가 아닌 종일휴무가 실시되도록 개선하고, 금요일 또는 토요일 근무 시에는 다음 주 가장 가까운 비공휴일에 휴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36조 【공무원 피복】** 교육감은 학교 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1. 방호원, 사무원(외근) 및 조무원 : 작업복
2. 조리사(원) : 위생복
3. 운전원 : 운전복

**제37조 【협의회개최】** ① 교육감은 제5조 제2항 3호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며, 협의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.

② 안건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부교육감으로 하고, 관련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.

**제38조 【근무환경개선】** ① 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고,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

장하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모든 급식실에 냉온풍기를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.

④ 교육감은 조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탈의실 및 샤워실을 확충 한다.

**제39조 【직원 동원 최소화】** ① 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 (시험감독 등)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기초 연수 및 각종행사 개최를 최소화 하며 지방공무원의 참석을 강요 하지 않는다.

**제40조 【한마음 체육대회 개최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.

## 제7장 교육재정

**제41조 【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】**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.

**제42조 【예산집행의 적정성】**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.

**제43조 【예산의 합리적 편성】** 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,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한다.

##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

**제44조 【육아시간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45조 【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】** 교육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46조 【병설유치원 겸임수당】**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한다.

**제47조 【민간경력 인정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 인정 추진에 있어서 행정보조, 과학보조 등의 경력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.

**제48조 【맞춤형 복지비 인상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한다.

**제49조 【휴무일 근무 개선】**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학교 개교기념일, 재량휴업일 등에 교원과 동일하게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9장 행정 제도 개선

**제50조 【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】**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, 상훈, 복무 업무, 인사기록카드정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.

**제51조 【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】** ①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교육감은 보건, 영양, 정보, 병설유치원 본연의 업무가 행정실로 부당하게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행정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하여 학교별 업무담당자 지정의 혼선을 제거하고, 학교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 한다.

⑤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지방공무원 인력풀(정원 외 관리) 제도를 운영한다.

⑥ 교육감은 중·고 병설학교의 경우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실도 중·고 별로 분리 설치하여 맞춤형 학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⑦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점검, 유해업소 점검 등에 필요한 보건직 공무원을 충원하고, 학교 행정실에 물관리, 우유급식 등 업무를 담당하

는 전문인력을 충원한다.

⑧ 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행정실장은 6급으로 배치한다.

⑨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과장급 보직이 2개 이상인 지역은 선임 과장직급을 4급으로 선임 담당직급을 5급으로 한다.

**제52조 【방화관리자 업무 등】**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·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
**제53조 【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】**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(지정)하는 방안을 마련하여,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시설직 공무원을 충원·배치하여 학교의 1,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를 전담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54조 【학교시설물 관리】**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.

**제55조 【감사방법 등】**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·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직원간 마찰을 막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 자체감사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.

③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 등 감사를 면제한다.

④ 교육감은 감사기구 및 인력을 지역교육청에도 확보하여 지역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
**제56조 【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】**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**제57조 【승진제도개선 등】** 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심사방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② 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.

③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한다.

**제58조 【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등】** ①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조리사(학교회계직 조리사 포함)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위생점검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.

② 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현실에 맞게 시행한다.

## 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

**제59조 【호봉상한제 폐지】**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**제60조 【성과상여금 지급개선】**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②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, 휴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시 산정된 등급 전액을 지급한다.

**제61조 【초·중등교육법 개정】** 교육감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2항 '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'를 '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'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.

**제62조 【도의회 서류제출】** ① 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.

**제63조 【도의회 행정사무감사】**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·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하고 본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유효 기간)**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.

**제2조(이행방법)** 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·지도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.

**제3조(협약의 보관)**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.

**제4조(관계법령의 준용)**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013. 5. 24.